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의 기록관 자체 평가·폐기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의령군

관 련 자 ① 의령군 ○○과(전 ○○과) 지방○○○○ ○○○

② 의령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7. 9부터 2016. 6. 30까지 ○○과에서 ○○○
○담당으로 기록관 운영을 총괄하였고, 지방○○○○○ ○○○는 2010. 12. 24.부
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기록관은 보존기간
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제50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만 절차에 따라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물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은 그 보존기간을 2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 의령군 ○○관(○○과)은 2015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에서 보존하고 있던 1987년 생산,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 ‘호적사건접수장’, 본적지신고서류 편철장’ 등 9권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평가대상으로 분류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이 무단파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이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만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평가심의회회의 심의에 따라 기록물 평가·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